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4호 2016. 9. 9.(금)

선	기관의 장
람	

【조 례】

【규 칙】

【훈 령】

제260호 공주시 사무 통제 규정 일부개정규정 1

【예 규】

【공 고】

제2016-1443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16-1444호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

제2016-1456호 「공주시 경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3

제2016-1463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
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7

제2016-1464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7

【고 시】

제2016-133호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49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사무 통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6년 9월 9일

공주시 훈령 제260호

공주시 사무 통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사무 통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한시적 협조 부서 지정(제8조 관련)

인계부서	단위사무명	인수부서	한시적 협조부서
기업경제과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과	기업경제과

공주시 공고 제2016-1443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월송LH행복주택 및 효성아파트단지가 2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있어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구역변경 및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나(공주시 조례 제1051호 / 2016. 3. 28) 사업자에 의한 행정구역 지번 누락으로 추가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송동 LH행복주택(누락분)
 - 금흥동 3필지 197m² ⇒ 월송동으로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 2016. 9. 9. ~ 2016. 9. 30.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9. 30.까지 공주시장(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시정담당관실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2042 FAX : 041-840-2305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주시 등의 명칭과 구역 (제2조제2항 관련)

동명칭	구 역
반죽동	종전의 공주시 반죽동 일원
봉황동	종전의 공주시 봉황동 일원
중학동	종전의 공주시 중학동 일원
중 동	종전의 공주시 중동 일원
산성동	종전의 공주시 산성동 일원
교 동	종전의 공주시 교동 일원
웅진동	종전의 공주시 웅진동 일원
금성동	종전의 공주시 금성동 일원
옥룡동	종전의 공주시 옥룡동 일원
금학동	종전의 공주시 금학동 일원
봉정동	종전의 공주시 봉정동 일원
주미동	종전의 공주시 주미동 일원
태봉동	종전의 공주시 태봉동 일원
검상동	종전의 공주시 검상동 일원
오곡동	종전의 공주시 오곡동 일원
신기동	종전의 공주시 신기동 일원
소학동	종전의 공주시 소학동 일원
상왕동	종전의 공주시 상왕동 일원
신관동	종전의 공주시 신관동 일원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323-6, 산28-9, 산27-5, 323-4, 산27-3, 산27-4, 산27-6, 산28-6, 323-5
쌍신동	종전의 공주시 쌍신동 일원
월미동	종전의 공주시 월미동 일원

동명칭	구역
석장리동	종전의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일원
송선동	종전의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일원
동현동	종전의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일원
금흥동	종전의 공주시 금흥동 일원 종전의 월송동 551-1, 556-6, 558-1, 560-3~4, 산53-4~6
월송동	종전의 공주시 월송동 일원 종전의 공주시 신관동 1-24, 1-29, 1-32, 1-35, 1-40, 1-45, 5, 5-7~13, 5-16, 5-19, 5-21, 8, 22-1, 22-10, 22-13~14, 22-33~36, 22-48, 22-50~52, 22-54, 22-57, 22-61, 22-73~74, 22-109, 22-125~126, 22-128, 22-138~139, 22-143, 22-152, 22-170, 22-173, 22-176, 22-195, 22-197, 22-208~212, 36, 36-1, 36-13, 36-24~25, 36-27, 40-6~10, 130, 537-29~30, 537-32, 537-40, 668, 산9-8, 산9-27, 산9-31, 산 9-60, 산9-76, 산9-103 종전의 금흥동 246-11, 246-28~31, 251-6, 257-2, 258-2, 258-4, 258-19, 563-9, 567-1, 산39, 산40-4, 산42-4, 258-14, 258-15, 258-17
무릉동	종전의 공주시 무릉동 일원
27개동	

공주시 공고 제2016-1444호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 변경을 통하여 읍·면·동의 주민복지서비스 전문성과 공공복지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주요내용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별도 설치 운영(18년까지 전국 확대)
 - * 우리시는 16년 유구읍, 신관동, 17년 계룡면, 18년 전면 시행 예정
-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을 복지기능 강화에 부합토록 “행정복지센터” 로 변경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읍면동사무소 등 기관 명칭 변경(별표)

- ‘유구읍사무소’ ➡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신관동주민센터’ ➡ ‘신관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계룡면사무소’ ➡ ‘계룡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2017년 1월 1일자 적용사항)

3. 입법예고 기간 : 2016. 9. 9. ~ 2016. 9. 30.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9. 30.까지 공주시장(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시정담당관실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2042 FAX : 041-840-2305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를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를 각각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상의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소재지(위치)에 ----- -----.</p>
<p>제2조(소재지)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위치는 별표와 같다.</p>	<p>제2조(정의)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p>

[별표]

시청 및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소재지

(제2조관련)

기관명	소재지	비고
공주시청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공주시청별관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5 (교동 120)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87-1 (석남리 264)	
이인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17 (이인리 159-2)	
탄천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5 (삼각리 523-2)	
계룡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89 (월암리 50-3)	
반포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30 (공암리 375)	
의당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3 (칭룡리 661-1)	
정안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157 (광정리 253)	
우성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51 (동대리 418)	
사곡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03 (호계리 309)	
신평면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안뜸길 14 (산정리 169)	
중학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감영길 4 (반죽동 241-2)	
웅진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9-8 (금성동 182-2)	
금학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496-3 (금학동 357-8)	
옥룡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342 (옥룡동 산 7-1)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1길 24-5 (신관동 585-4)	
월송동주민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51 (월송동 481-3)	

공주시 공고 제2016-1456호

「공주시 경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경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과 정체성 있는 국토경관 및 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관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중임
-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구성 : 본문 42조, 부칙 3조, 별표 3, 별지 9
- 경관계획의 내용 (안 제6조 ~ 제11조)
- 경관사업의 대상 (안 제12조 ~ 제19조)
- 경관협정 (안 제20조 ~ 제31조)
- 사회기반 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안 제32조)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안 제33조)

-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 ~ 제37조)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안 제38조 ~제3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 주소 : (우)32552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 전화 : 041)840-8554 / FAX: 041)840-232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 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

조례명 : 공주시 경관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경관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공주시 전역의 특성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서 공주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자문"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성이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에 경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 관 계 획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위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시·도 경관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지형 여건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계획을 변경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위반 여부

5.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

6.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재산권침해 등)

7.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8.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관계획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공주시 경관위원회에 해당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제출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시장은 경관계획에 있어서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1. 경관법에서 정하는 사항

2. 경관계획구역(공주시 전 지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

3. 경관형성 방침과 경관설계지침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고도보존지구, 관광특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관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공주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있어서 양호한 경관형성·관리를 위한 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해당 구역마다 정하도록 한다.

③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공주시 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④ 전항의 규정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변경 및 해제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10조(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별 경관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11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②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에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와 공주지역을 주된 보급소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경 관 사 업

제12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 저수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

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4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 ①법 제16조 제2항 및 영제8조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착수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시장은 영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4항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시 마다 별도로 위촉 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관사업 업무 소관 국장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사업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6.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⑨ 시장은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특정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3.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4. 기타 경관개선을 위한 지붕개선 사업
-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변경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9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⑦ 그 밖의 재정 지원 절차,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9조(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및 평가)** ①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도서 검토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결과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자에게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④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경 관 협 정

- 제2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외부 색채계획
5. 당해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 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방안
6. 사업 미 추진 시 지원금 환수 방안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4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법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위원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5조(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15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법 제23조에 따라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영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제28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0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 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장 경 관 심 의

제3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영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제3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가설 건축·축사 및 버섯재배사 등 파이프 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는 제외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연면적 100㎡ 초과하는 건축물
4. 시장이 경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은 별표 2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공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는 건축물
3. 다른 법령·조례 등에서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및 창고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6장 경 관 위 원 회

제34조(경관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4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공주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할 수 있고, 기타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3. 경관 디자인 소관 업무 공주시 4급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경관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9호 또는 제9-1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공모 당선작 : 실시설계 초기단계

2. 용역사업 :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 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 : 기본디자인(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전

제3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위원의 위촉·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5.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그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3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0명이상 20인 이내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제34조 제4항2호의 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본인, 친·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 심의·의결 및 자문에 참여 할 수 없다.

제3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별표 1,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디자인(색상, 형태, 재질, 규격 등)의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3. 별표 1,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주무부서의 경관협의 대상) ① 주무부서의 경관협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1. 별표 1,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2.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경관 개선을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도시경관관련팀(과)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사업의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영 제26조 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을 응하지 않을 때

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소위원회 등에 출석 또는 서면 심의·자문 하는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① 제32조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에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내지 39조와 관련된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③ 이 조례 제정·시행 이후에도 제34조에 의한 경관위원회가 구성·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2장 경관계획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별표 1】

사회기반시설 심의·자문대상

구 분	심의 대상	자문대상	주무부서 협의대상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
도로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이 20m 이상 폭 1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육교, 길이 50m 이상 터널, 생태통로 		
도로부속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30m이상, H=1.5m 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폭 15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20m이상, H=1.5m 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미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
공공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1억원 이상 5억 미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 공주시 공공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시 심의자문 제외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1억원 이상 5억 미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조경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 분수, 인공폭포, 수목원, 캠핑장,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0억 미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 분수, 인공폭포, 수목원, 캠핑장,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5억 미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 분수, 인공폭포, 수목원, 캠핑장,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100면 이상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30면 이상 100면 미만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30면 미만 조성사업
터미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조명사업 총사업비 1억원 이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조명사업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
조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이 10미터 이상의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에 관한 사항 	-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	-

※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로 산정한다.

※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받을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건축물 심의·자문대상

유형	심의 대상	자문대상	주무부서 협의대상
1. 단독주택(경사지붕 외 주택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다중, 다가구주택,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초과 • 도시지역 외지역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50㎡ 초과 330㎡ 이하 • 도시지역 외지역 :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50㎡ 초과 2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자문 대상 외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동주택 	-	-
3. 상업용, 업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 운동시설 • 업무, 숙박, 위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0㎡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0㎡ 초과 1,0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청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3의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100㎡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3의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100㎡ 이하 	-
4. 기타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및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0㎡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00㎡ 이상 5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자문 대상 외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 교정및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식장 • 야영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 연면적 500㎡ 초과 • 도시지역 외 지역 : 500㎡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 연면적 200㎡ 초과 500㎡ 이하 • 도시지역 외 지역 : 연면적 200㎡ 초과 5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자문 대상 외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별표 3】

공공건축물

구 분	내 용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나.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도서관, 복지회관, 예술회관, 박물관 등) 다. 시에서 건축하는 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협의 대상 건축물(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 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사. 공중화장실 아.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관광안내소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별지 제4호 서식]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경관 사업 (협정)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비	구 분	금액(원)	비율(%)	
	총사업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자체부담 사업비			
<p>「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경관법시행령」 제17조, 「공주시 경관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공주시장 귀하</p>				
붙임서류				수수료
1. 사업비 산출근거				없음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뒷면)

안전제출시 구비서류 (요청한 부수)

1. 사업개요 및 심의(자문) 상정 사유
 2. 재상정 안전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3. 경관 형성계획서
 - 위치도 (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 사진 (5×7) 3~4매
 - 디자인 컨셉 (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색채계획도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조감도,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4. 현상공모 당선작의 경우 작품디자인 기본컨셉, 작품명, 작가명 등 명기
 5. 경관조명 시설이 포함될 경우 등기구 관련 도면 (종류, 수량, 용도 등 명기)
 6. 시설물이 어떤 가로조성사업 일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 ※ 계획서 작성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 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위 항목 중 해당사항 및 기타참고서류 함께 제출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공주시 경관조례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안전산업국 도시정책과 국 장 : 지방기술서기관 이장복 과 장 : 지방행정사무관 김대환 담 당 : 지방행정주사 이장호 작성자 : 지방환경주사보 김진섭							
4. 근거법령명 등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경관계획 수립 제안자, 경관사업 시행을 받으려는 자, 경관협정 체결자, 경관협정의 승계자, 사회기반시설 중 조례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조례 별표2, 3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함	입법예고	수렴중		
	이해관계자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함	입법예고	수렴중		
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존속기한 설정대상 아님 ※ 경관심의제도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존속기간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관계획의 내용(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경관계획에 있어서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공주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을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별 경관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 경관사업의 대상(제12조) 							

	<p>-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을 정함</p> <p>○ 경관사업계획서(제13조) -영 제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p> <p>○ 경관사업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제14조) -법 제16조 제2항 및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p> <p>○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제15조)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 할 사항을 정함</p> <p>○ 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및 평가(제19조)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p> <p>○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제20조)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규정함</p> <p>○ 경관협정의 내용(제21조)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함</p> <p>○ 경관협정서(제22조) -법 제19조 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함</p> <p>○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제23조) -법 제20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p> <p>○ 경관협정의 인가(제24조) -법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위원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시장은 인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p> <p>○ 경관협정의 폐지(제26조) -법 제23조에 따라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영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정함.</p> <p>○ 경관협정의 승계자(제27조)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도록 함</p> <p>○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제31조)</p>
--	--

	<p>-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함</p> <p>○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제32조)</p> <p>-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영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별표 1과 같이 정함</p> <p>○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제33조)</p> <p>-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을 정함</p> <p>-경관지구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p> <p>-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p> <p>-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연면적 100㎡ 초과하는 건축물</p> <p>-시장이 경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은 별표 2로 정함</p> <p>○ 위원의 위촉·해촉(제26조)</p> <p>-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촉 할 수 있도록 정함</p> <p>○ 회의운영(제37조)</p> <p>-경관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p> <p>○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제38조)</p> <p>-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함</p> <p>-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p> <p>-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p> <p>-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p> <p>-별표 1,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p> <p>○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제39조)</p> <p>-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함</p> <p>-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p> <p>-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디자인(색상, 형태, 재질, 규격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p> <p>-별표 1,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p> <p>○ 주무부서의 경관협의 대상(제40조)</p> <p>-소규모 사업의 경우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정함</p> <p>○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제41조)</p> <p>- 제26조 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함</p>
--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 필요성

○ 경관 규제의 필요성

- 아름다운 국토·도시를 보전하고 형성하여 후세에 물려줄 자산으로서 국토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이미지에 부합하는 경관보전·관리·창출을 위해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의 제정(2007) 및 전부개정(2014)으로 상위법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경관계획의 제안,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처리·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일정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하는 규제임

○ 규제시 발생 문제점

-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 「경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 규제대상 : 경관계획 수립 제안자에 대한 규제사항
 - ▶ 경관계획 수립 제안에 있어 제안자의 구체적인 의도를 파악하고, 경관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받도록 하였음. 공주시 경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 신설이 필요함
-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 경관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규제대상 : 경관계획 수립자에 대한 규제사항
 - ▶ 「경관법」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이외에 공주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주요 규제대상은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가로, 광장, 수변 등), 공공건축,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지역 고유의 문화경관 보전 및 관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임
 - ▶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에 의해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주시의 정체성을 담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신설이 필요함

- **제9조(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계획 수립시 경관형성을 위해 행위제한을 특히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 규제대상 : 경관계획 수립자에 대한 규제사항
 -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은 경관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85호)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시 지정하고 경관관리를 위해 구역에 대해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향후,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2019년)시 꼭 필요한 조항임.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은 경관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수렴, 경관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 규제사항 이행에 따른 별도의 행정절차, 비용 등은 수반하지 않음. 또한 중점경관관리 구역에 대한 집중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구역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공주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10조(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구역별 경관지침을 준수도록 함
 - ▶ 규제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
 - ▶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향후 공주시 경관계획 재정비(2019년)시 지정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하고, 경관계획의 내용에 해당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 향후,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행위허가시 주민 또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경관을 형성·관리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본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공주시 경관조례」의 내용을 준수하면 행위허가에 대한 별도의 규제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본 조항은 개발행위에 앞서 경관에 대한 자가 체크를 하기위한 유도조항으로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 각 지자체별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공주시에서도 2014년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경관계획의 실효성 부재로 유명무실한 계획으로 전략하고 있음. 향후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됨.

- **제12조(경관사업의 대상)** :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을 정하였음

- ▶ 규제대상 :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 법령에서 정한 사업이외에 공주시 경관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을 위한 사업,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을 추가하고, 공주시가 금강 및 제민천, 정안천을 끼고 형성된 입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변경관, 하천, 저수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음. 규제적 성격보다는 경관에 대한 인식 향상과 공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항으로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13조(경관사업계획서)** : 영 제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음
- ▶ 규제대상 :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 영 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경관사업계획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14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 : 법 제16조 제2항 및 영제8조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 및 착수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 규제대상 : 경관사업자
 - ▶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서 제출은 경관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경관법 시행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으로 신고서 및 착수신고서의 양식을 제시한 것으로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15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 영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였음
- ▶ 규제대상 : 경관사업자
 - ▶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에 대한 고려사항 이외에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경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본 조례에서 정한 경관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

하도록 하였으며, 경관사업 심의 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19조(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및 평가)** :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에 대해서 별지 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 규제대상 : 경관사업자 완료자
 - ▶ 경관사업 완료시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경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2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영 제10조 제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 규제대상 : 경관협정 체결자
 - ▶ 시행령에서 정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인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에서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할 권리를 가진자로 확대한 사항으로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제21조(경관협정의 내용)** : 영 제11조 제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 규제대상 : 경관협정 체결자
 - ▶ 시행령에서 제시한 경관협정의 내용(녹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경관 조명 등의 관리, 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 식재, 조경계획 및 관리, 건축물 색채 등 협정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경관협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상으로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22조 ~ 제27조(경관협정서,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의 인가, 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폐지)** : 법 제19조 제5항 제8호/법 20조 제2항 및 영 제12조 1항 / 법 제 21조 / 법 제20조 및 24조/법 23조/법 1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 규제대상 : 경관협정 체결자, 경관운영회, 경관협정 승계자
 - ▶ 경관협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관협정서의 양식,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협정의 인가양식, 변경 및 폐지 시 양식, 협정 승계시의 양식을 규정하였음. 전반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계적으로 운용을 위한 서식 및 조항으로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3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 영 제17조 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 규제대상 : 경관협정 지원 대상자
 - ▶ 시행령에서 명시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체결자 또는 운영회의 대표자,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사업비용”만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계획서에 꼭 필요한 “사업명,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비 조달 계획, 유지·관리 계획, 관련 도서”등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서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조항으로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3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영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 규제대상 : 사회기반시설 사업 시행자
 - ▶ 경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공주시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경관심의제도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을 향상하고자 마련하였음. 그간 SOC사업은 기능성·경제성 위주로 조성됨에 따라 획일적, 위압적 경관형성으로 주변과 경관의 부조화를 이루었음. 공주시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심의, 자문, 협의대상 규모를 정한 조항으로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3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 규제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자
 - ▶ 법령에서 위임한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외에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100㎡ 초과하는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 중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규제를 신설하였음. 공공건축물은 현행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본 조항이 신설되더라도 별도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으며, 향후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기능을 경관위원회에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임. 일반건축물 중 특히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00㎡이상의 상업·업무용 건축물 및 500㎡이상의 공장 및 창고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음. 경관법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항의 규제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38조 ~ 제39조(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 영 제24조 제3호 및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 규제대상 :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협정 체결자, 사회기반시설 사업 시행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
 - ▶ 경관조례의 개정, 경관계획의 승인, 경관사업의 심의 및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40조(주무부서의 경관협의 대상)** : 일정규모 이하의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쳐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대체하고자 제정
 - ▶ 규제대상 : 사회기반시설 사업 시행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자
 - ▶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관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경관관련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공주시의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4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 영 제26조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 규제대상 : 경관위원회
 - ▶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규제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경관위원회

- 공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공공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대체하여 공공디자인 위원(15명)에 경관과 관련된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경관위원회(30명) 운영할 예정으로 경관위원회 운영은 실현가능성이 높음

○ 경관계획

- 공주시 경관계획은 2014년에 수립되어 있으며, 2019년에 재정비기 이루어져야함. 경관계획의 승인을 위해서는 공주시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실행가능성이 높아지며, 경관조례가 미제정되면 충청남도의 경관위원회에 그 기능을 위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행정적인 소요일수 늘어남. 경관조례의 제정 및 경관위원회가 구성되면 경관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이 증대될 것임

○ 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위원회의 승인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실현가능성이 높아짐.
-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계획 재정비 시 설정할 예정이며, 토지이용시스템에 중점경관관리 구역을 고시하여 개발행위시 자가 검토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 경관사업 및 협정

- 경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및 경관협정 체결이 가능함. 조례 제정 시 경관사업 및 협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추진 가능성이 높아짐

○ 경관심의 및 자문

- 경관위원회의 구성 후 심의 및 자문이 가능함

다.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규제의 비용분석

- 제4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 심의·자문하는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 비용추계 미첨부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예상되는 비용

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의 편익분석**

- 경관심의로 인한 사업자의 비용발생은 미미한 반면, 편익은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 거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한 사업성 증대 및 창의적인 디자인 창출 등 미시적인 측면까지 기대할 수 있어 훨씬 크다고 판단됨
- 또한, 경관심의를 통하여 쾌적한 공간환경 조성을 유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편익이 발생

라.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공주시의 정체성은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제안, 경관사업, 경관협정,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심의,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제임
- 경관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명확성과 일관성이 있음
- 규제의 법적근거 :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 조례의 존속기한 부여는 타당하지 않으며 조례 폐지 시까지 존속

공주시 공고 제2016-1463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9일

공 주 시 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추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상위법령 미반영 및 위반 사항의 조례를 개정하고
-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경제적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일괄개정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62개 중 107개의 조항을 개정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1개(50개 조항)

○ 개정 구분 내역

개정 구분	소관위	조례/조항	개정의 구분 설명
상위법령 미반영	행복위	19개/22건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그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 정비
상위법령 위반	행복위	9개/10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또는 자치 조례 중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정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행복위	13개/18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한 조례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9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 할 곳 : 공주시청 문화재과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2604

- 전 화 : (041) 840-2306 FAX : (041) 840-203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공주시 홈페이지 : <http://www.gongju.go.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사항

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기획담당관실(의회법무규제팀 041-840-203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
의위원회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기획담당관

제1조(「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명~~을~~” 을 “2명~~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을~~” 을 “2명~~을~~” 으로, “1인~~과~~” 를 “1명~~과~~” 로, “1인~~으로~~” 를 “1명~~으로~~” 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사고 등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3월~~을~~” 을 “2개월~~을~~” 로 한다.

제35조 중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한다.

제3조(「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반영하여야” 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로 한다.

제4조(「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제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의 연장사항

제2장 시정담당관

제6조(「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를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 로 한
다.

제7조(「공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관계기간” 을 “국제화 업무추진에 관계된 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공청회 등 개최)” 를 “(세미나 개최)” 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청회 및 세미나” 를 “세미나” 로 한다.

제8조(「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의 개정) 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선출·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를 “스스로 물러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해제 되는 경우”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공주시 조례 제704호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 한다.

제10조(「공주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을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조례 제10조제4항” 으로, “시홈페이지” 를 “시 홈페이지” 로 한다.

제3장 인사담당관

제11조(「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률” 을 “법령 및 조례 등”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령이” 를 “법령 및 조례에서” 로 한다.

제12조(「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를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직된” 을 “면직된” 으로, “있다.” 를

“있다,” 로 한다

제13조(「공주시 공인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14조(「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7호” 를 “제8호” 로 한다.

제4장 미디어담당관

제15조(「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해” 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제19조 중 “의한” 을 “다른” 으로,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를 “ 「국가정보 보안 기본 지침」 에 따라서” 로 한다.

제5장 감사담당관

제16조(「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장 사회과

제18조(「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자원봉사활동 장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장려를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직장·학교 등 법인 및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7장 복지지원과

제19조(「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 중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하며”로 한다.

제20조(「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 를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로 한다.

제2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2조제4호를 같은 조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를 삭제한다.

제8장 시민봉사과

제21조(「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 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호**” 로 한다.

제9장 회계과

제22조(「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으

로 하고, 제4조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4조제6항, 제9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7조제6항”을 “영 제17조제5항”으로, “영 제35조제3항”을 “영 제35조제2항”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필요

하다고 정하는” 을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3항” 을 “제2항” 으로 한다.

제23조(「공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의 개정) 공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장 세무과

제24조(「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8항에 따라” 로, “포상금지급” 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으로 한다.

제11장 문화재과

제25조(「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하며,” 를 “한다.” 로 하고 후단부분을 삭제한다.

제12장 교육체육과

제26조(「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의 개정)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평생학습 협의회” 를 “평생교육협의회” 로 한다.

제4조 중 “평생학습협의회” 를 “평생교육협의회” 로 한다.

제27조(「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3월” 을 “80일” 로 한다.

제13장 보건과.

제28조(「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를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적으로한다” 를 “심의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보건의료” 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20인이내” 를 “20명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 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관내 학교 보건 관계자, 단체의 임직원
3. 관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5.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3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4장 문화시설사업소

제29조(「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장 복지시설사업소

제30조(「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7장 의회사무국

제31조(「공주시의회 공인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공주시회의의원 중 1인과 공주시 관계 공무원 중 1인으로 선임한다.</p> <p>③·④ (생략)</p>	<p>제2조(구성) ① ----- ----- ----- 2명을 ----- -----.</p> <p>② ----- 2명 ----- 1명과 - ----- 1명으로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고 등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공주시 시설관리 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 연도의 결산을 당해사업연도 종료 후 <u>3월</u>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완료 후 결산서는 영 제 3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하고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결산) ① ----- ----- --- <u>2개월</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공단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u>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5조(공무원의 파견) ----- ----- ----- ----- ----- <u>공무원</u> ----- ----- -----.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회의결과) 시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권고 등을 시정에 적극 <u>반영하여야</u> 한다.	제11조(회의결과) ----- ----- --- <u>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u> - -.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공청회)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지역신문·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p> <p>1. ~ 5. (생 략)</p> <p>6. <u>기타 필요한 사항</u></p> <p><신 설></p> <p>③ (생 략)</p>	<p>제9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u></p> <p>7. <u>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u></p> <p>③ (현행과 같음)</p>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5. (생 략)</p>	<p>제4조(위원회 기능) -----</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의 연장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 ----- -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 ----- -----.

**공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관계기간</u> 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 ----- ----- <u>국제화 업무</u> <u>추진에 관계된 기관</u> ----- ----- -----. <삭 제>

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생략)</p> <p>② <u>위원이 선출·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통장이 위촉한다.</u> <후단 신설></p>	<p>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스스로 물러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해제 되는 경우----- ----- .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 <u>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 (생략)</p>	<p>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u>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p>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② (생 략) ③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1. (생 략) 2. 공주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u>공주시의회 의원 3인</u> 3. <u>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u>자</u></p> <p>④ ~ ⑨ (생 략)</p> <p>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u>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u>에 따른 공고는</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p> <p>1. (현행과 같음) 2. <u>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u> 3. <u>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u> 4. ----- ----- -----<u>사람</u></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p>제16조(공표방법 등) ----- ----- ----- ----- ----- <u>법 제13조제2항</u> 및 법 제26조제1항, 조례 제10</p>

관보·시보·소식지·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u>시홈페이지</u> 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u>조제4항</u> ----- ----- <u>시 홈페이지</u> -----.
--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 - <u>법령 및 조례 등</u> -----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u>법령</u> 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u>법령 및 조례</u> 에서 ----- ----- ----- ----- ----- ----- -----.

1. ~ 4. (생략) ② ~ ④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파견근무) ①·② (생략)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p> <p>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p> <p>제11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면직된 ----- ----- ----- ----- ----- - 있다,</p>

공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u>공</u> <u>인</u>의 글자와 규격은 「<u>행정업무</u> <u>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u>」 을 준용한다.</p>	<p>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u>공</u> <u>인</u>의 글자와 규격은 「<u>행정 효</u> <u>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p>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u>제7</u> <u>호</u>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 레기처리업무·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 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 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 과 같다.</p>	<p>제3조(장려수당) ----- <u>제</u> <u>8호</u>----- ----- ----- ----- ----- ----- ----- ----- ----- -----.</p>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와 시장이 특별히 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p> <p>5.·6. (생략)</p> <p>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p> <p>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p> <p>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2조</p>	<p>제2조 (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p> <p>5.·6. (현행과 같음)</p> <p>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p> <p>① ----- -----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p> <p>② ----- ----- -----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p>

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
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공
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③ (생략)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생략)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
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
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
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
리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
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
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
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제19조(비밀번호관리) -----
--- 따른 -----
----- 「국가정보
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서 --
-----.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신고포상금 환수) <u>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u></p>	<p>제15조(신고포상금 환수) <u>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u></p>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 (생략) ② <u>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u></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p>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자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료를 센터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③ (생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

<p><신 설></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6. (생략)</p> <p>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략)</p> <p>② 위촉직 위원 <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1.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하며 ----- ----- -----.</p>
--	--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u>보육시설</u> 공급을 고려하여 <u>공립어린이집</u>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이</p>	<p>제11조(설치) ① ----- -----<u>어린이집</u> ----- -----.</p>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 8. (생략)

② (생략)

제2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3. (생략)

4.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학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보조금의 환수) -----

--.

<삭제>

2. 3. (현행과 같음)

1. (현행 제4호와 같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p>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p>	<p>해당하는 경우 <삭 제></p>
--	--------------------------------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접수된 민원사안 중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 및 문제점 해소는 물론 종합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u>민원조정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민원처리에 관한 법률</u>」 제34조에 따라서 <u>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u>----- -----.</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u>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조(구성) ① <u>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2. (생략)</p> <p>3.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u>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p>	<p>제4조(기능) ①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민원처리에 관한 법률</u>」 <u>제34조제2호</u> ----- --</p>

4. ~ 6. (생략) ②·③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③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u><신설></u></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⑨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략)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은 외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7항-----

제35조제2항에 따라-----

-----.

<p>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2. (생략)</p> <p>④ (생략)</p> <p>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제5항제4호에 의거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u>필요하다고 정하는</u> 경우는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략)</p>	<p>----- ----- -----.</p> <p>1.·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u>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u> -----.</p> <p>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p>
---	--

**공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u>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분기별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u><삭제></u></p>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제8항에 따라 ----- <u>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u> ----- -----.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료) 박물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주차한 차량의 물품분실, 파손, 도난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주차료) 박물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u>평생학습 협의회</u> 제4조(설치) 시장은 평생학습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u>평생학습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u> 를 둔다.	제2장 <u>평생교육협의회</u> 제4조(설치) ----- ----- ----- <u>평생교육협의회</u> ----- -----.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생략)

5. 공주시의회의원

6.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2.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3조(구성) ① -----
----- 20명이내-----
-----.

② (현행과 같음)

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지역주민 대표

2. 관내 학교 보건 관계자, 단체의 임직원

3. 관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4. (현행과 같음)

5.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삭 제>

<p>제7조(자문 및 자료 협조) 보건복지 <u>지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 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 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u></p>	<p><삭 제></p>
---	--------------------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한다.</p> <p>1. (생 략)</p> <p>2. <u>수탁자가 고마에 새로운 시 설물을 증축 · 개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 증축 · 개축 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공 주시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u></p> <p>3. (생 략)</p>	<p>제13조(수탁자의 의무) ----- ----- -----.</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3. (현행과 같음)</p>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손해배상) ① 이용자 또는</p>	<p><삭 제></p>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한다.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u>」 제40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p>	<p>제1조(목적)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40조----- ----- ----- ----- -----</p>

공주시 공고 제2016-1464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9일

공 주 시 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추진 자치법규 일체정비 추진에 따른 상위법령 미반영 및 위반 사항의 조례를 개정하고
-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경제적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일괄개정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62개 중 107개의 조항을 개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1개 조례 (57개 조항)

○ 개정 구분 내역

개정 구분	소관위	조례/조항	개정의 구분 설명
상위법령 미반영	산업위	13개/21건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그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 정비
상위법령 위반	산업위	14개/20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또는 자치 조례 중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정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산업위	13개/16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한 조례 정비

3. 의견제출

-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9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 할 곳 : 공주시청 문화재과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2604
- 전 화 : (041) 840-2036 FAX : (041) 840-203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공주시 홈페이지 : <http://www.gongju.go.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사항

- 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기획담당관실(의회법무규제팀, 840-2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안전관리과

제1조(「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제2조(「공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의 개정) 공주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42조제2항 따라 매년 점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를 “협조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에 따라야 한다” 를 “협조 할 수 있다” 로 한다.
할 수 있다.

제2장 기업경제과

제4조(「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2항에 따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조(「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다음” 을 “다음”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업무를” 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으로, “단체에

의뢰할 경우” 를 “단체와” 로 한다.

제6조(「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육성 계획” 을 “지원 계획에 따른 시행”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을 “(사회적기업 지원 계획의 시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를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를 “(소비생활센터 설치)”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을 “(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비자보호와” 를 “소비자권익과” 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소비자보원

제1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센터” 를 각각 “소비생활센터” 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1호, 제28조제1호 및 제2호 중 “소비자보호” 를 각각 “소비자권익” 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수당등)” 을 “(수당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제시” 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제시” 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을 “사람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를” 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익보호와” 를 “권익향상과” 로 한다.

제8조(「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거치지 아니하고” 를 “거쳐” 로 한다.

제3장 건설과

제9조(「공주시 농업생산 기반 조성 시행 조례」의 개정) 공주시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토지의 가격평정)” 을 “(토지가격의 평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를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로, “100인” 을 “100명” 으로 한다.

제10조(「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수리계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4장 산림과

제12조(「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다른 법률에서의”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 도시정책과

제13조(「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때에는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처리한다”로 한다.

제14조(「공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6장 허가과

제15조(「공주시 건축 조례」의 개정)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임명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6조(「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9항, 건축법 제11조 「건축법」”을 “「주택법」,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7장 교통과

제17조(「공주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공주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3호 중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중 “이내의”를 “이내에”로,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19조(「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을 “자전거를 이용

하려는” 으로, “시 소유의 자전거” 를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 소유의 공공자전거” 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을 “시장은” 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민자전거(“시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를 “시민자전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에 거주하는” 을 “자전거를 이용하는” 으로 한다.

제20조(「공주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정차단속 공무원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견인대행요원증 중 “주민등록번호” 를 각각 “생년월일” 로 한다.

제8장 환경자원과

제21조(「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 을 “**법 제14조제2항**” 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포함)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별표1의 4와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음식물용봉투 및 공공용봉투**” 를 “**공공용봉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용봉투**” 를 “**공공용봉투**”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불투명), 음식물용은 엷은 노란색, 공공용**” 을 “**(불투명), 공공용**” 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및 음식물용 봉투,**” 를 “**및**”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13조제2항 본문 중 “**1인당**” 을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1인 가구는**” 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매수)**” 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납부필증 매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후**” 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구입자가**” 로, “**이사될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쓰레기봉투의**” 를 “**이사 또는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전 거주지의 일반용 쓰

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다.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제한(신설) (제6조제6항 관련)

구 분	50 ℓ	100 ℓ
무 게	13kg이하	25kg이하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3조(「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 을 “법 제14조제5항”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3조” 를 “법 제14조” 로, “생활폐기물” 을 “생활폐기물을 처리 할 때”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여럿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중 “10일전” 을 “1개월전” 으로 한다.

제9장 수도과

제24조(「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25조(「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26조(「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 대표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7조(「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를 “제정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8조(「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의 개정) 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1인을 두고,” 를 “1명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를 “수 있다” 로 한다.

제10장 토지과

제29조(「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회피하지 아니한” 을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하려는” 으로 한다.

제30조(「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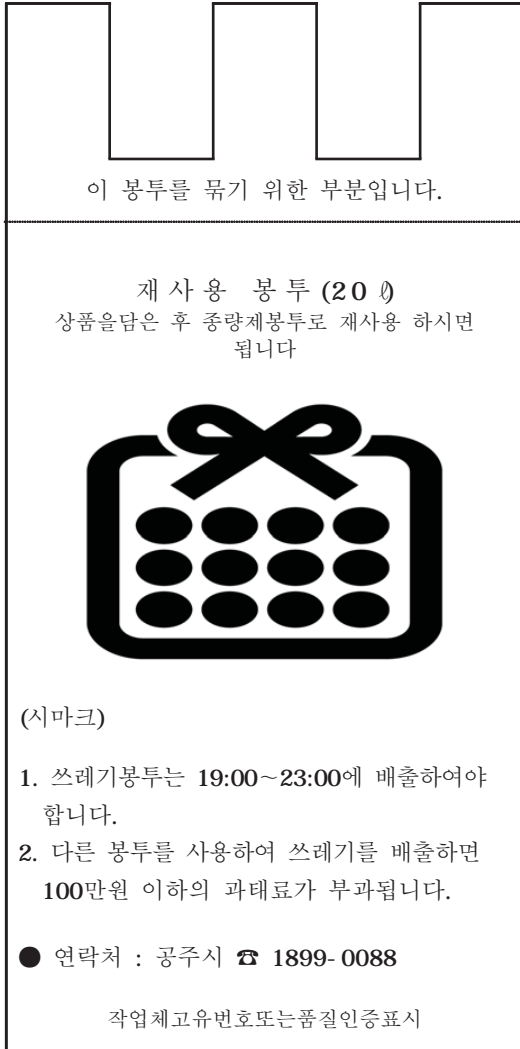
제3조제2항 중 “규칙으로 정하여” 를 “정하여” 로 한다.

제11장 농정과

제31조(「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치원·보육시설”을 “유치원·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영유아보육시설단체”를 “영유아어린이집단체”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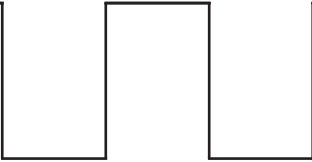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사양서(제9조제5항 관련)

1.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쓰레기봉투 (20ℓ) - 일 반 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2. 쓰레기봉투는 19:00~23: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3. 반드시 소각용 쓰레기만 배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 주 시 장 연락처 : 공주시 ☎ 1899-0088 쓰레기는 반드시 소각용, 불연성(매립용), 재활용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p> <p><u>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u></p> <p>2. ~ 5. (생략)</p>	<p>제6조(해임) -----</p> <p>-----</p> <p>-----</p> <p>-----.</p> <p><u>1. 단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u></p> <p>2. ~ 5. (현행과 같음)</p>

**공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생략)</p> <p><u>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u></p>	<p>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시장은 제42조제2항 따라 매년 점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하</u></p>

③ (생략)	<u>개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	-------------------------------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p> <p>② 공주시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공주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험도평가에 <u>협조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이에 따라야 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협조할 수 있다.</p>
<p>제10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생략)</p> <p>② 공주시 지역본부장은 충청남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p>	<p>제10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이에 따라야 한다.</u></p> <p>③ (생략)</p>	<p>----- -----<u>협조</u>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	---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9조의2(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조문이동 2014.12.15.)</p>	<p>제19조의2(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제2항에 따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p>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 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u>다음</u> 각 호의 어</p>	<p>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① ----- ----- -- <u>다음</u> -----</p>

<p>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 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② (생 략)</p> <p>제5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제 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협약체결 등) ① ----- 제 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 --- 단체와 -----.</p> <p>② (현행과 같음)</p>
--	---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사회적기업 등의 <u>육성 계획</u> 에 관한 사항</p> <p>2.·3. (생 략)</p> <p>제5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 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기 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u>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u></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 ----- -.</p> <p>1. ----- <u>지원 계획</u> <u>에 따른 시행</u>--</p> <p>2.·3.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시 행) ① 시장은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u>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u> <u>여야 한다..</u></p>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계획의 추진방향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삭 제>

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및 "사업자"의 정의	<u>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u> <u><삭 제></u>

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5조(시험·검사·조사등) 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는 처리부서와 읍·면·동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는 처리부서에서는 시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보호원
2. 3. (생략)

제9조(소비생활센터 설치)

제10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 소비자권익과 -----

제15조(시험·검사·조사등) ①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1. 한국소비자보원
2. 3. (현행과 같음)

<p>4. 기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단체</p> <p>④ (생략)</p> <p>제27조(수당등) ① (생략)</p> <p>②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8조(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점검 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삭 제></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7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제시-- 사람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를 --.</p> <p>제28조(지도단속) ----- 권익 향상과 ----- ----- -----.</p> <p>1. ~ 3. (현행과 같음)</p>
---	--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생략)</p>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p>	<p>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u>거치지 아니하고</u> 결정한 다. ③·④ (생 략)	----- ----- <u>거쳐</u> ----- --. ③·④ (현행과 같음)
--	---

공주시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토지의 <u>가격평정</u>) ①·② (생 략) ③ <u>법 제53조제1항</u> 규정에 의 <u>거</u> 수혜자 총수가 <u>100인</u> 을 초 과할 경우에는 수혜자총회의를 대의원회의로 같음할 수 있다.	제4조(토지가격의 <u>평정</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40조제1항</u> 에 따라 --- ----- <u>100명</u> ----- -----.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도로법」 시행령 제1 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 ----- ----- ----- ----- -----.

<p>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17.]</p> <p>1. <u>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u></p> <p>2. <u>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u></p> <p>3. <u>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u></p> <p>4. (생략)</p> <p>② ~ ⑥ (생략)</p>	<p>-----</p> <p>-----</p> <p>1. <u>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u></p> <p>2. <u>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u></p> <p><삭제></p> <p>4.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	---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위원회 기능)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2. (생략)</p> <p>3. <u>다른 법률에서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u> (조문 이동 2015.6.26.)</p> <p>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p>	<p>제2조(위원회 기능) -----</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u>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u> -----</p> <p>-----</p> <p><삭제></p>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삭 제>

<p><u>받을 수 있다.</u></p> <p><u>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회의일시 및 장소</u> <u>2. 심사사항</u> <u>3. 회의진행 상황</u> <u>4. 위원 발언요지</u> <u>5. 심의결과</u> <u>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삭 제></u></p>
--	---------------------------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비용부담) ① ~ ③ (생략)</p> <p><u>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관리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u></p> <p>⑤ ~ ⑧ (생략)</p> <p>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② (생략)</p>	<p>제11조(비용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 ----- ----- 때 에는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처리한다.</p>
---	---

공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p>	<p><삭 제></p>

공주시 건축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생략)</p> <p>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건축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현행과 같음)</p> <p>⑥ 시장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임명한다.</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u>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2. ~ 5. (생략)</p>	<p>----- ----- -----.</p> <p>1.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p> <p>2. ~ 5. (현행과 같음)</p>
--	---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⑤ (생략)</p> <p>⑥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4. ~ 9. (생략)

⑦·⑧ (생략)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② (생략)

<신설>

제18조(과징금 처분)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4. ~ 9.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과징금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내에 -----
-- 발급한다.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

공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시민자전거”란 <u>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u>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u>시 소유의 자전거</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자전거를 이</u> <u>용하려는</u> ----- ----- ----- <u>공주시(이하</u> <u>“시”라 한다) 소유의 공공자전</u> <u>거</u>---</p>
<p>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p> <p>1.·2. (생략)</p> <p>3. <u>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u>를 준수해야 할 책무</p>	<p>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 ----- ----- -----.</p> <p>1.·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생략)</p>	<p>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시장</u> 은 <u>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u>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시장</u> 은 <u>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도로 정한다.</u>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처리능력(시설·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법 제13조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 ----- ----- ----- <u>법 제14조제2항</u>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④ (생략)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봉투(매립용, 소각용, 재사용)와 음식물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에는 주민의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및 골목 쓰레기 등 공공의 쓰레기를 각각 담아 배출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쓰레기봉투는 일반용은 흰색(불투명), 음식물용은 옅은 노란색, 공공용은 옅은 청색으로 하며, 재사용봉투는 손잡이를 부착한 생분해성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단체 표준규격에 의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⑤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포함)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별표1의 4와 같이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 -----

-- 공공용봉투-----
-----.

② -----
----- 공공용봉투-----

-----.

③ (현행과 같음)

④ -----
-(불투명), 공공용-----

-----.

제10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② (생략)

③ 일반용 및 음식물용 봉투,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업자에게는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에 당해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9퍼센트 범위안에서 판매 이윤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3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 4.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 전입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인당 500리터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및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수료 감면) ①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

-----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1인 가구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업소에서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대상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19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제1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납부필증 매수) ①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구입자가 -- 이사 또는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전 거주지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시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20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삭 제>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

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삭 제>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
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 하거나 제2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23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
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삭 제>

제24조(과태료의 수납부 비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
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
수의 예를 준용한다.

<삭 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u>10일전까지</u>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2. ~ 5. (생략)</p>	<p><u>고 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p> <p>1. ----- ----- ----- <u>1개월전</u> ----- ----- -----.</p> <p>2. ~ 5. (현행과 같음)</p>
---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p> <p>5. ~ 11. (생략)</p> <p>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 징수의 경우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4."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p> <p>5. ~ 11. (현행과 같음)</p> <p><삭제></p>
--	--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삭제></p>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재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8조(기업관리 규정) ----- ----- --- 제정 할 수 있다.</p>
<p>제15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p>1. 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p> <p>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된 것이 확실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② (생 략)</p> <p>③ 위원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u></p> <p>2. <u>수질전문가</u></p> <p>3. <u>민간단체</u></p> <p>4. <u>소비자</u></p> <p>5. (생 략)</p> <p>6.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u></p>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u>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u></p> <p>2. <u>시민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대표</u></p> <p><삭 제></p> <p>4. <u>수도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3. (현행 제5호와 같음)</p> <p><삭 제></p>

**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고, 시장이 임명한다.</p> <p>② <u>관리자는 안전산업국장으로</u></p>	<p>제4조(관리자의 지정) ----- ----- - 1명을 -----.</p> <p><삭 제></p>

<p><u>한다.</u></p> <p>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u>경우에는 시장</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8조(기업관리규정) ----- ----- ----- <u>수 있다.</u></p>
--	---

**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 결정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u>회피하지 아니한</u> 경우</p>	<p>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하려는</u> --</p>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p>	<p>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p>

공주시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2. (생략)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5. (생략)

제11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2. (생략)

3. 공주시 학부모단체, 영양사 협의회, 급식관련 시민단체, 영유아보육시설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5. (생략)

④ (생략)

제15조(업무의 분담) 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3. -----
--- 어린이집

4. 5.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 영유아어린이집단체 -----

4.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업무의 분담) -----

-----.

1. (현행과 같음)

<p>2. 복지지원과장: 급식경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u>보육시설</u>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시설과 관련되는 예산의 확보,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총괄 [개정 2013.12.2. 2014.12.15]</p> <p>3. · 4. (생략)</p>	<p>2. ----- ----- --- <u>어린이집</u> ----- ----- ----- -----</p> <p>3. · 4. (현행과 같음)</p>
---	---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촌지역 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 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2016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9월 09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 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역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도모
3. 사업내용
 -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하신리, 온천리 일원
 - 나. 면 적 : 1.640ha
 - 다.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도자문화커뮤니티센터, 마을공동주차장, 온천리 산책길 조성, 가로등 조성
 - 지역경관개선 : 전통우물복원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 컨설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등
 - 라. 금회 승인대상 세부사업내용

기 능 별	사업비 (천원)	사 업 내 용	비 고
총 계	2,960,000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기반확충	2,435,069		
○ 도자문화커뮤니티센터	954,960	· 연면적 - 239,43m ² · 부지조성 및 초화류 식재	상신리
○ 마을공동주차장조성	994,269	· 조성면적 : 3,000m ² · 주차대수 : 59대	상신리
○ 온천리산책길조성	385,620	· 산책길 조성 : 700m · 운동 시설 및 휴식 시설, 안내표지판	온천리
○ 가로등설치	100,220	· 가로등 조성 : 29개소	
<input type="checkbox"/> 지역경관개선사업	85,815		
○ 전통우물복원	85,815	· 조성면적 : 57m ² · 우물복원 : 1 식	온천리
<input type="checkbox"/> 지역역량강화사업	379,116	· 지역역량강화사업, 제경비	
<input type="checkbox"/> 예 비 비	60,000		

4. 사업비 소요액 : 2,960백만원(국비 2,072, 도비 134, 시비 754)

5. 사업 예정기간 : 2012년 ~ 2016년(5년간)

6.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8.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전략사업과 ☎ 041-840-8694)